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7 선고 2023가단50171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이관우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6. 26.

판 결 선 고 2023. 8. 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남양주시 D 하천 1,045㎡ 중 115/7225 지분에 관하여 2022. 7. 8.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907,95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07,9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남양주시 D 하천 1,045㎡ 중 115/7225 지분에 관하여 2022. 7. 8.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792,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7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의 부친인 망 E은 남양주시 D 하천 1,045㎡ 중 115/144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지분에 관하여 2008. 5. 9.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망 E, 근저당권자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망 E은 2011. 2.경 사망하였고, 이에 망 E의 상속인들은 C의 모친인 망 G이 이 사건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1. 7. 12. 망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27. “C은 원고에게 11,206,603원 및 그 중 9,810,384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2018. 4. 2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라. 그 후 망 G이 2022. 3.경 사망하였고, 이 사건 지분을 자녀들인 H, F, C, I, 피고가 각 1/5 지분씩 상속하게 되었는데, 피고를 포함한 위 상속인들은 2022. 3. 7.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22. 7.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이루어진 후인 2022. 7. 12. 피고의 변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적극재산 없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를 비롯하여 J카드, K카드, L카드, M 등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이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남양주시 D 하천 1,045㎡ 중 115/7225 지분(이 사건 지분 중 1/5, 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C의 채무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27. “C은 원고에게 11,206,603원 및 그 중 9,810,384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2018. 4. 24.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이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를 비롯하여 J카드, K카드, L카드, M 등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채무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2022. 7. 12. 피고의 변제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지분의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중 이 사건 상속지분인 1/5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으로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104,539,775원(= 개별공시지가 1,257,000원 × 1,045㎡ × 이 사건 지분 115/1445,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7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은 6,907,955원[(이 사건 지분의 가액 104,539,775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70,000,000원) × 1/5(이 사건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6,907,95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907,9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학식

1) 위 금액은 채권최고액으로서 실제 채무액이 이에 미치지 못할 여지도 있으나, 원고가 스스로 위 금액이 피담보채무액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위 금액을 피담보채무액으로 보고 산정한다.